개호보험
이용 안내

개호보험 제도란?

개호보험제도는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자택에서 자립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40 세 이상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 전체에서 개호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 가입자

○가입자(피보험자)는 연령에 따라 2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65 세 이상인 분(제 1 호 피보험자)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 세~64 세로 의료보험에 가입된 분(제 2 호 피보험자)

개호보험 대상인 특정 질병에 의해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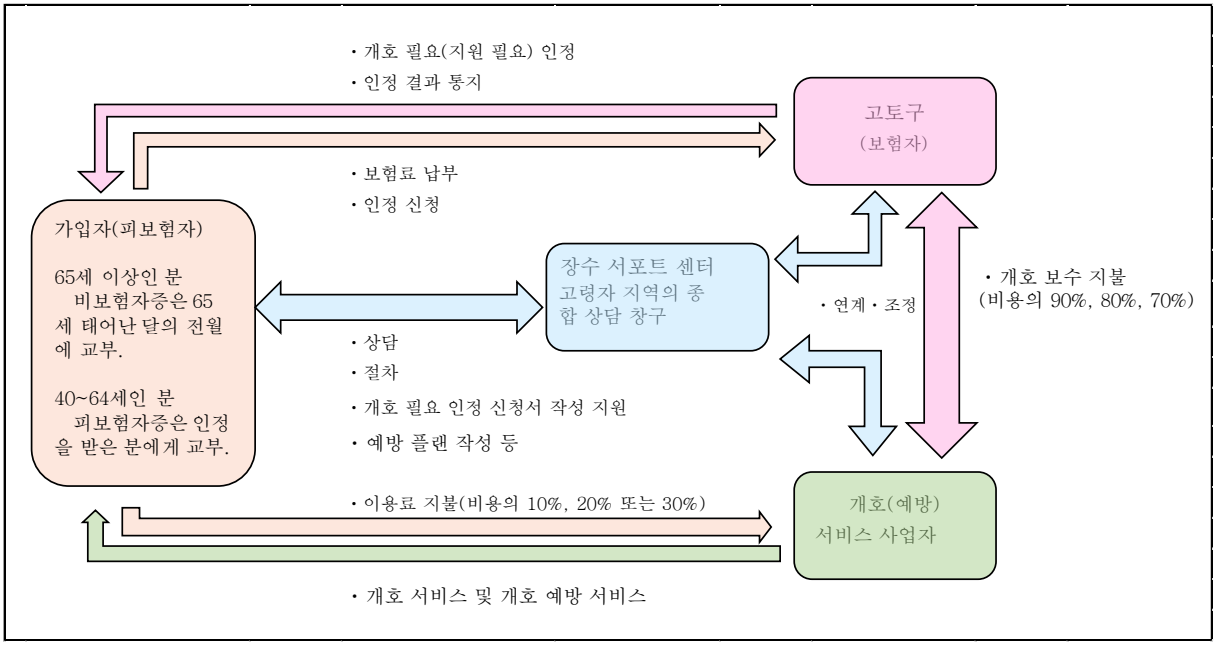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내용

피보험자증 (녹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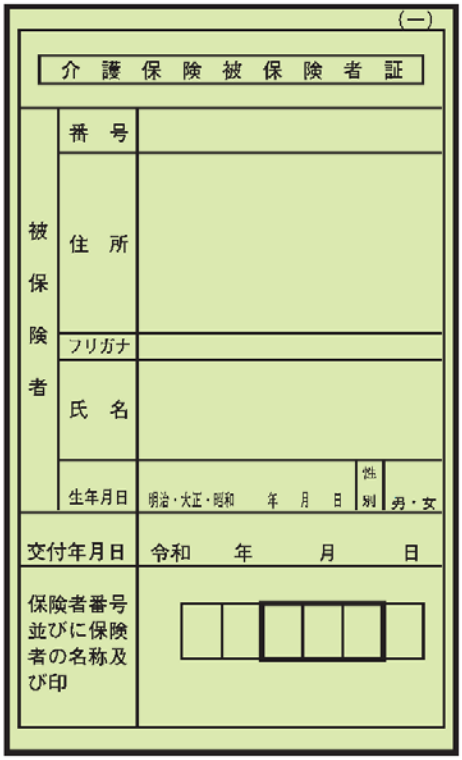
(一)

介護保険被保険者証

被保険者	番号	
	住所	
	フリガナ	
	氏名	
	生年月日	明治・大正・昭和　年　月　日　性別　男・女
交付年月日		令和　年　月　日
保険者番号並びに保険者の名称及び印		

피보험자증 (녹갈색)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은 개호보험 피보험자의 증명서이며, 개호(예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증을 받으면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시다.

피보험자증이 필요할 때

- 개호 필요 인정을 신청할 때
- 케어 플랜을 작성할 때
-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은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 제시하는 의료보험 피보험자증과는 다릅니다.

○취급에 관한 주의점

피보험자증에는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소중히 취급해 주십시오.

- 복사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증 대여는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악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피보험자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피보험자증은 변경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호보험료

○보험료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개호보험은 40 세 이상인 분들이 납부하는 개호보험료가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개호가 필요할 때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호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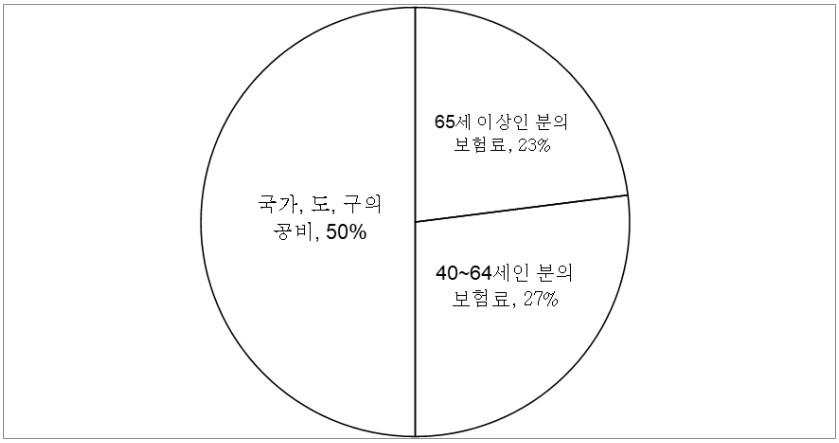

○65 세 이상인 분(제 1 호 피보험자)의 개호보험료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3 년마다 보험료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2026 년까지 65 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3 년간 필요한 개호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산출된 기준액을 바탕으로 주민세의 과세・비과세 및 전년도 소득 금액에 의해 정해집니다.

개호보험료액은 65 세 생일 다음 달 중순,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6 월 중순에 결정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의 다음 달 중순에 결정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개호보험료액은 별표와 같습니다.

2024 년~2026 년도(제 9 기)의 개호보험료(연액)

소득 단계	대상자	보험료 (연액)
제 1 단계	생활보호수급자, 노령복지연금수급자로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자인 분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수입액의 합계가 연액 80 만엔 이하인 분	21,120 엔
제 2 단계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소득금액의 합계가 연액 120 만엔 이하인 분	29,760 엔
제 3 단계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소득금액의 합계가 연액 120 만 엔을 초과하는 분	48,360 엔
제 4 단계	본인이 주민세 비과세자이고, 세대에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분으로 총소득 금액과 과세 연금소득금액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63,240 엔
제 5 단계	본인이 주민세 비과세자이고, 세대에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분 중 4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분	74,400 엔
제 6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125 만엔 미만인 분	85,560 엔
제 7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125 만엔 이상 200 만엔 미만인 분	96,720 엔
제 8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200 만엔 이상 300 만엔 미만인 분	119,040 엔
제 9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300 만엔 이상 400 만엔 미만인 분	133,920 엔
제 10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400 만엔 이상 500 만엔 미만인 분	148,800 엔
제 11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500 만엔 이상 600 만엔 미만인 분	163,680 엔
제 12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600 만엔 이상 800 만엔 미만인 분	186,000 엔
제 13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800 만엔 이상 1,000 만엔 미만인 분	208,320 엔
제 14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1,000 만엔 이상 1,500 만엔 미만인 분	223,200 엔
제 15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1,500 만엔 이상 2,000 만엔 미만인 분	238,080 엔
제 16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2,000 만엔 이상 2,500 만엔 미만인 분	252,960 엔
제 17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2,500 만엔 이상 3,000 만엔 미만인 분	260,400 엔
제 18 단계	본인이 주민세 과세자이며, 총소득 금액이 3,000 만엔 이상인 분	267,840 엔

○개호보험료 납부 방법

개호보험료 납부 방법은 연금 금액에 따라 2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금의 연액이	
18 만엔 이상인 분	18 만엔 미만인 분
특별 징수 연금의 정기 지불(연 6 회) 시, 개호보험료가 미리 공제됩니다.	보통 징수 계좌 이체나 납부서로 개호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특별 징수 대상인 연금은 노령 및 퇴직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입니다.
※납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연금의 연액이 18 만엔 이상이라도, 특별 징수로 바뀔 때까지 일시적으로 납부서로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막 65 세(제 1 호 피보험자)가 된 분
・다른 구시정촌에서 전입한 경우
・연도 도중에 연금 수급이 시작된 경우
・연금이 일시 정지나 지급 정지가 된 경우 등

○개호보험료를 체납하면

개호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체납한 기간에 따라 보험 급여의 일시 정지나 제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비용을 일단 전액 지불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호보험과 자격보험료계(℡3647-9493)로 상담해 주십시오.

○개호보험료 감액 제도에 대해

보험료 단계가 제 1~3 단계인 분은 수입이 일정 이하 등의 8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40~64 세인 분의 개호보험료

개호보험료액은 가입된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직장의 건강보험)마다 지정된 산출 방법에 의해 정해지며, 의료보험의 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신청부터 이용까지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속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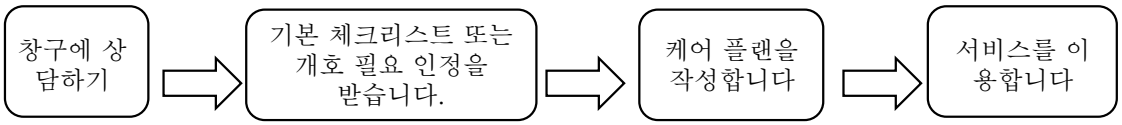

●기본 체크리스트를 받습니다.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이용만 희망하시는 분은 기본 체크리스트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개호 필요 인정을 받습니다

종합 사업 이외의 서비스 이용도 희망하시는 분은 개호 서비스 필요 여부에 따라, 개호 필요 인정을 받습니다.

①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장수 서포트 센터, 구청 개호보험과**에서 신청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 서포트 센터 등의 대행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방문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신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본인, 가족 등으로부터 청취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주치의의 의견서를 토대로 구가 심사를 실시합니다.

③인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개호가 어느 정도 필요한 상태(개호 필요 상태 구분)인지 심사하고, 그 인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정 결과 통지서'와 '새로운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이 송부됩니다.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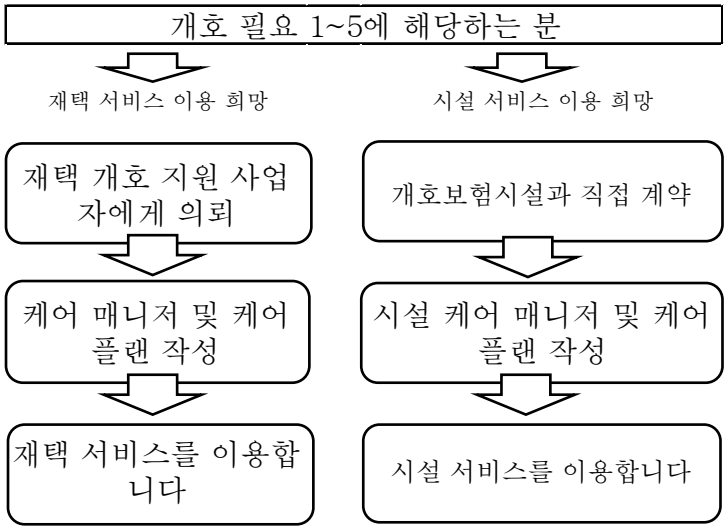

재택 개호 지원 사업자

케어 매니저를 배치하여,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연락 및 조정을 실시하는 구시정촌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입니다.

케어 매니저(개호지원 전문직원)

케어 플랜을 작성하는 전문가입니다. 재택 개호 지원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케어 플랜이란, 이용자가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심신 상태에 따라, 자립을 위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본인・가족・케어 매니저 등이 논의하여 작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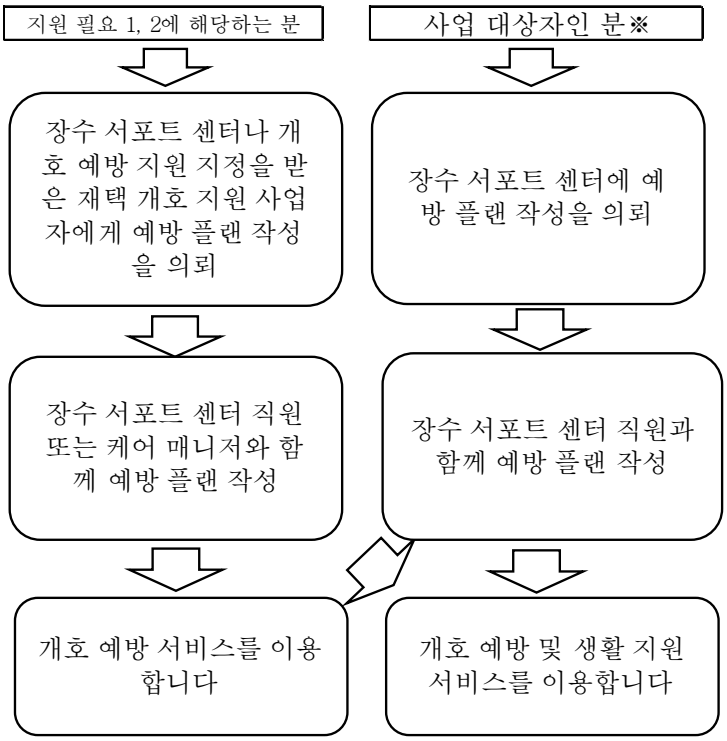

인정 결과가 '비해당'으로 나오신 분은 장수 서포트 센터로 재차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본 체크리스트를 접수하고, 사업 대상자에 해당되면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 후생노동성이 정한 25 가지 문항(기본 체크리스트)에 따라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대상(지원 필요 상당)자'에 해당한다고 판정된 분.

●개호 서비스의 종류

개호보험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재택(개호 예방) 서비스

집에서 이용하기

개호 서비스의 종류	개호 필요	지원 필요
방문 개호	○	－
개호 예방형 방문(종합 사업)	－	○
방문 입욕 개호	○	○
방문 재활	○	○
방문 간호	○	○
재택 요양 관리 지도	○	○

시설에 통원하며(묵으며) 이용하기

개호 서비스의 종류	개호 필요	지원 필요
통원 개호	○	－
개호 예방형 통원(종합 사업)	－	○
통원 재활	○	○
단기 입소 생활 개호	○	○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

시설 내에서 이용하기

개호 서비스의 종류	개호 필요	지원 필요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	○

생활 환경 조성하기

개호 서비스의 종류	개호 필요	지원 필요
복지 용구 대여	○	○
특정 복지 용구 구입비 지급	○	○
주택 수리비 지급	○	○

지역 밀착형(개호 예방) 서비스

개호 서비스의 종류	개호 필요	지원 필요
지역 밀착형 통원 개호	○	－
개호 예방형 통원(종합 사업)	－	○
치매 대응형 통원 개호	○	○
치매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	△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	○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	－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	－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	－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	－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	－

시설 서비스

개호 서비스의 종류	개호 필요	지원 필요
개호 노인 복지 시설(요양원)	△	－
개호 노인 보건 시설(노인 보건 시설)	○	－
개호 의료원	○	－

개호 필요: 개호 필요 1~5 로 인정된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호 필요 1・2 에 해당하는 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015 년 3 월 이전 입소자와 특례입소자 제외)

지원 필요: 지원 필요 1, 2 로 인정된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표시의 경우에는 지원 필요 1 에 해당하는 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

개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용자의 부담은 소득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10%, 20% 또는 30%를 지불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보험자(고토구)가 사업자에게 지불합니다.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과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을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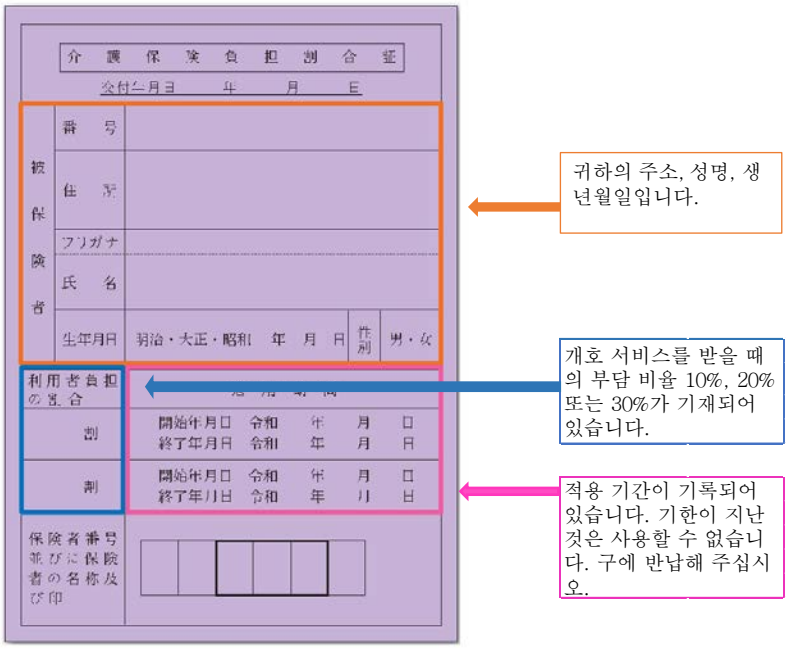

(보라색)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을 교부받는 분은

지원 필요・개호 필요 인정을 받은 분,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대상자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부 시기는

전년도 소득에 따라 부담 비율을 결정하여, 매년 7 월 중순에 교부합니다.

○적용 기간은

8 월 1 일부터 다음 해 7 월 31 일까지 1 년간입니다.

※새롭게 인정받은 분의 적용 기간은 신청일부터입니다.

이용자 부담 비율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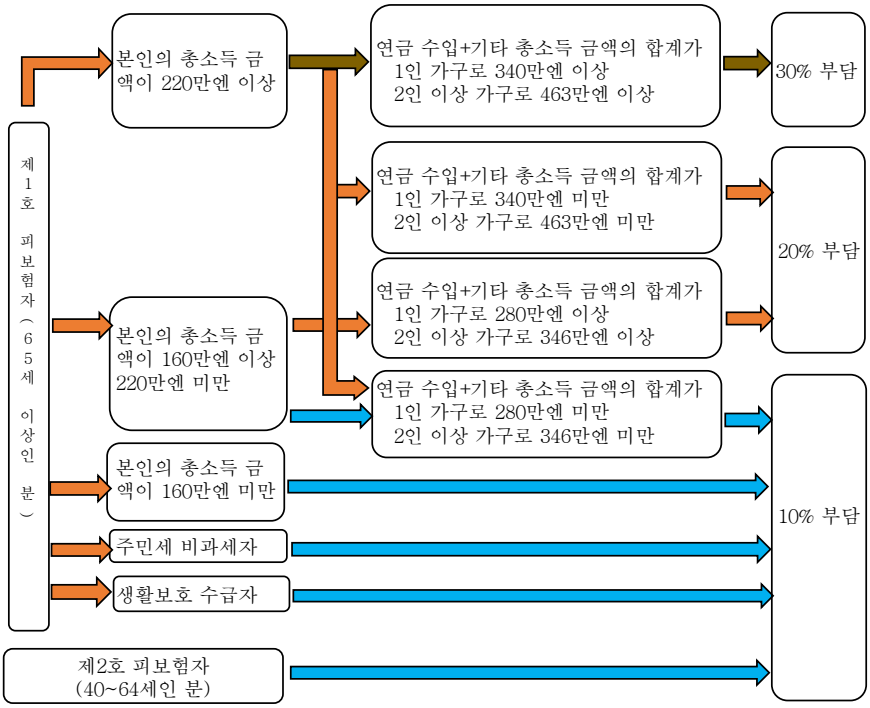

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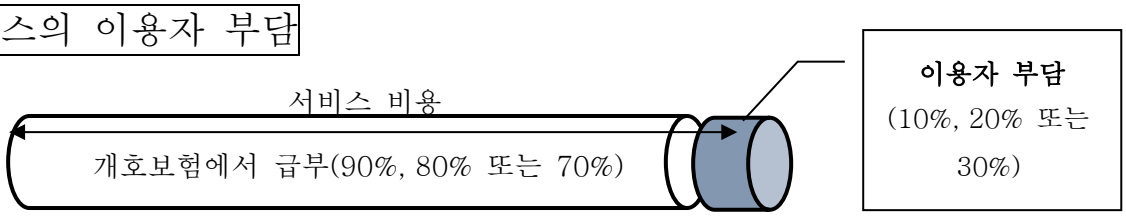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의 10%, 20% 또는 3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통원 개호 및 단기 입소 서비스, 시설 서비스 이용 시의 거주비(체재비), 식비, 일상생활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재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집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서비스 비용의 10%, 20% 또는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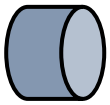

시설에 통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비용의 10%, 20% 또는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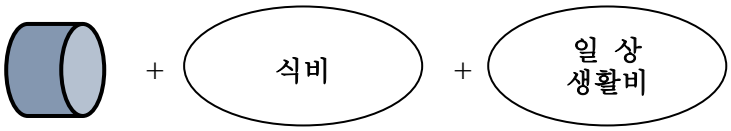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는 서비스

서비스 비용의 10%, 20% 또는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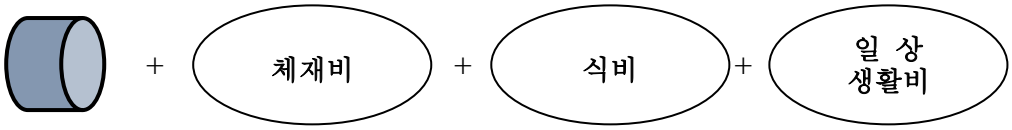

※본인 부담 비율은 '개호보험 부담 비율증'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시설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의 10%, 20% 또는 30%※부담에 추가로 거주비, 식비, 일상생활비를 부담합니다

이용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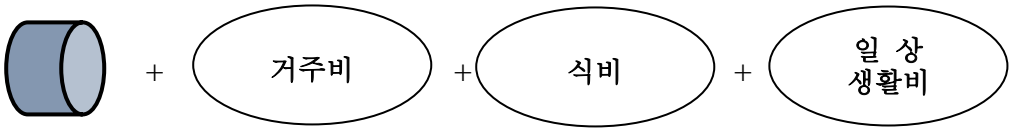

※시설을 이용한 경우의 거주비, 식비 부담 한도액

개호 시설을 이용할 때의 거주비(체재비), 식비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수입 등이 일정한 금액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을 통해 시설 이용 시의 거주비(체재비), 식비가 경감됩니다.

○부담액이 고액이라면?

가구 내에서 1 개월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부담액 중 아래 표의 상한을 초과한 금액이 고액 개호 서비스비로서 지급됩니다.

소득 구분		부담 상한 월액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는 분 등		(개인) 15,000엔 (가구) 15,000엔
가구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자		(가구) 24,600엔
	전년도 과세 연금소득금액과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가 연액 80만엔 이하인 분	(개인) 15,000엔 (가구) 24,600엔
주민세 과세 가구		
	과세 소득 380만엔 미만인 분	(가구) 44,400엔
	과세 소득 380만엔 이상 690만엔 미만인 분	(가구) 93,000엔
	과세 소득 690만엔 이상	(가구) 140,100엔

개호보험과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액이 높아지면?

개호와 의료 두 제도의 상한액을 적용한 후에, 가구 내에서 1 년간의 본인 부담 합계액 중, 일정한 부담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고액 의료 합산 개호 서비스비로서 지급됩니다.※

※고액 개호 서비스비, 고액 의료 합산 개호 서비스비를 받는 경우는 구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자에게는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이용자 부담의 경감에 대해

생계 곤란자에 대한 이용자 부담액 경감 제도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예금이나 수입 등이 일정한 금액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신청을 통해 부담액이 경감됩니다.

이 제도의 이용은 사업자가 경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개호 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

‘개호 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이하 종합 사업)’이란, 구가 주체로 실시하는 지역 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그분의 상태나 필요성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종합 사업에서는 ①지원 필요로 인정된 분이나 생활 기능의 저하를 볼 수 있는 지원 필요 상당의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②65 세 이상의 모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개호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여러분의 개호 예방과 일상생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종합 사업 이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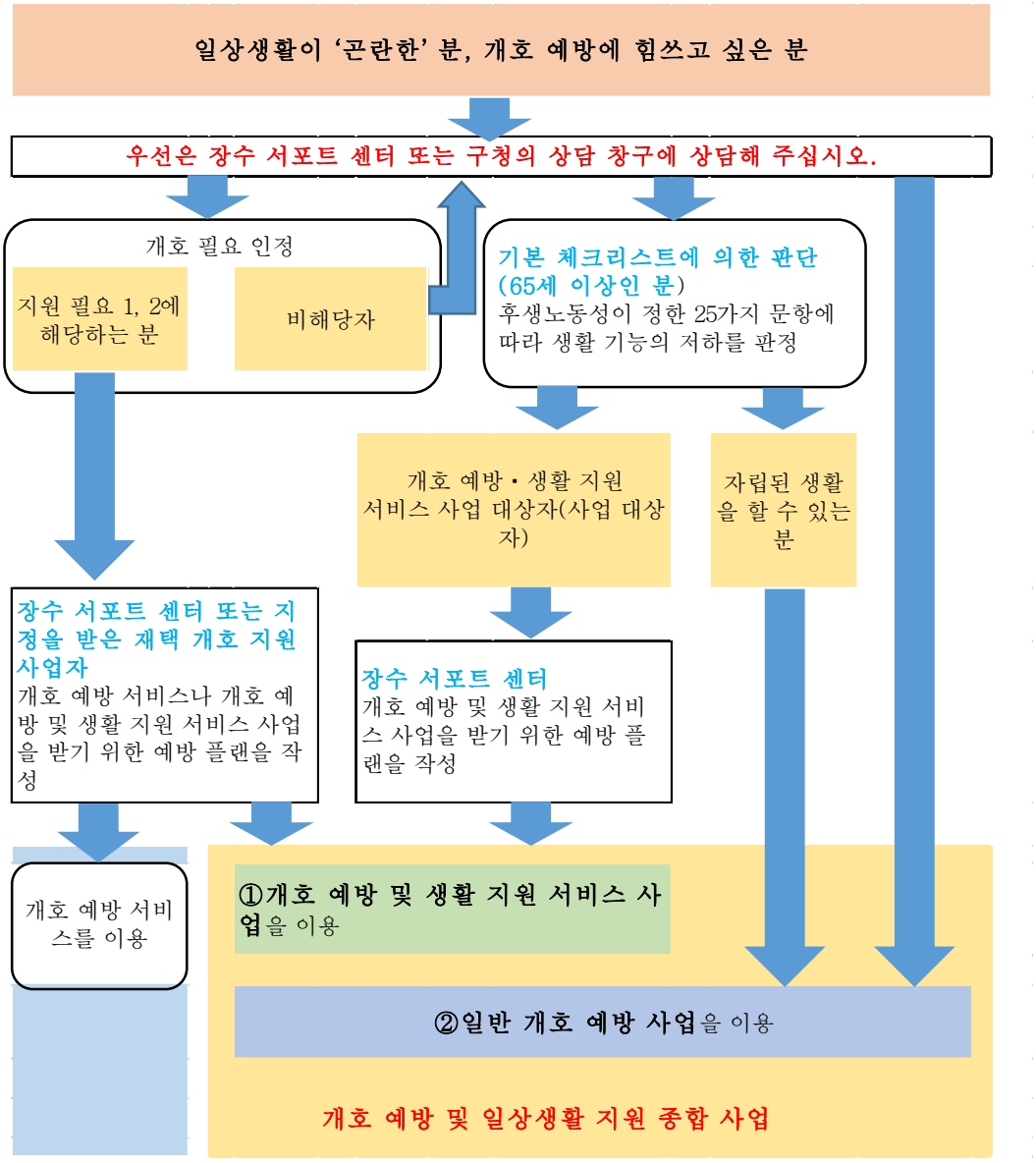

①개호 예방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

대상자

・지원 필요 1, 2 에 해당하는 분

・기본 체크리스트에서 서비스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 65 세 이상의 분

주요 서비스 내용

○개호 예방형 서비스(개호 예방형 방문・개호 예방형 통원)

필요에 따라 일상생활상의 지원이나 기능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이웃 미니 데이 서비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벼운 체조, 식사,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합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건강 관리 방문 및 건강 관리 트레이닝)

재활 전문직 등의 지도하에 단기 집중(원칙 3 개월)으로 생활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②일반 개호 예방 사업

대상자

・65 세 이상의 모든 분(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개호 예방 강연회

○개호 예방 리더 양성 강좌

○일반 개호 예방 교실

○시니어를 위한 체력 측정회

○고토 마스터즈 피트니스

○토코톤 오겡키! 클럽

개호보험에 관한 세금 공제에 대해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다음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65 세 이상으로 개호 필요 1~5 의 인정을 받았거나 거동을 못 하는 분이 장애인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구에서 '장애인 공제 대상자 인정서'를 받음으로써 '(특별)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공제 대상자 인정서'의 문의처는
개호보험과 재택지원계 Tel 03－3647－4319

○사회보험료 공제

개호보험료는 '사회보험료 공제'로서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연금에서 차감되는 보험료는 해당 연금 수급자 본인에게만 사회보험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이외 분의 사회보험료 공제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사회보험료 공제' 문의처는
개호보험과 자격보험료계 Tel 03－3647－9493

○의료비 공제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 시, 이용료 부담금의 일부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6 개월 이상 거동을 못 하는 상태이자, 의사가 발급한 '기저귀 사용 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기저귓값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개호 필요 인정을 받았으며, 기저귓값의 의료비 공제를 계속 받을 경우, 2 년째 이후부터는 의사의 증명서 대신 구가 발행하는 '기저귀 사용 확인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일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확인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저귀 사용 확인서'의 문의처는
개호보험과 서무계 Tel 03－3647－9481

장수 서포트 센터 목록

장수 서포트 센터는 개호보험법에 근거한 '지역 포괄 지원 센터'로, 보건사(간호사), 사회복지사, 주임 개호지원 전문직원 등의 전문가들이 연계하면서 고령자의 지역 생활을 지원합니다.

전화 상담은 물론이고, 자택 방문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시간

월~금요일 : 오전 9 시~오후 6 시

토요일: 오전 9 시~오후 3 시

(정기 휴일: 일요일 및 공휴일, 연말연시)

※도요스 장수 서포트 센터 상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요일: 오전 8 시 30 분~오후 5 시(수요일은 오후 7 시까지)

월 1 회 일요일 개설일: 오전 9 시~오후 4 시

[정기 휴일: 토요일, 일요일(월 1 회 일요일 개설일은 제외) 및 공휴일, 연말연시]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 지역
시라카와 장수 서포트 센터	시라카와 3-4-3-201	5646-1541	도키와, 신오하시, 모리시타 1, 2, 미요시 3, 4, 시라카와, 다카하시
우미베 장수 서포트 센터	우미베 12-13	3645-6761	센고쿠, 이시지마, 센다, 우미베, 오기바시
스미요시 장수 서포트 센터	스미요시 1-9-5	3635-0646	모리시타 3~5, 사루에, 스미요시, 모리
히라노 장수 서포트 센터	히라노 1-2-3	5639-9121	기요스미, 히라노, 미요시 1·2, 사가, 후쿠즈미, 후카가와, 후유키, 몬젠나카초, 기바 3
후루이시바 장수 서포트 센터	후루이시바 2-14-1-101	3641-2801	에이타이, 도미오카, 보탄, 후루이시바, 엣추지마, 기바 2
도요 장수 서포트 센터	도요 6-2-17	5665-4547	기바 4, 5, 도요
시오하마 장수 서포트 센터	시오하마 2-7-2	5617-6213	시오하마, 시오미, 기바 1, 6
도요스 장수 서포트 센터※	도요스 2-2-18	5859-0566	도요스, 시노노메, 아리아케, 아오미, 우미노모리
에다가와 장수 서포트 센터	이전 전 : 에다가와 1-8-15-101 ※2024 년 11 월 하순~2026 년 1 월까지 이전 예정 이전 후 : 시오미 2-8-7	5634-0158	에다가와, 다쓰미
가메이도 장수 서포트 센터	가메이도 1-30-8	5627-2525	가메이도 1, 2, 6
가메이도키타 장수 서포트 센터	가메이도 4-21-13	5626-0671	가메이도 3~5
가메이도히가시 장수 서포트 센터	가메이도 9-13-1	5875-3451	가메이도 7~9
오지마 장수 서포트 센터	오지마 6-14-4-103	5628-0541	오지마 3, 5, 6
오지마니시 장수 서포트 센터	오지마 4-1-37	3636-9857	오지마 1, 2, 4
오지마히가시 장수 서포트 센터	오지마 9-6-16	5836-5301	오지마 7~9
기타스나니시 장수 서포트 센터	기타스나 3-31-19	3615-4860	기타스나 1~3, 5
기타스나히가시 장수 서포트 센터	이전 전 : 히가시스나 4-20-17 ※2025 년 5 월 초순에 아래로 이전 예정 이전 후 : 기타스나 6-	5606-1744	기타스나 6, 히가시스나 1, 2

	20-30		
기타스나미나미 장수 서포트 센터	기타스나 7-7-1-101	6660-2050	기타스나 4, 7, 미나미스나 4, 5
히가시스나 장수 서포트 센터	히가시스나 4-16-12	5857-8243	히가시스나 3~7
미나미스나 장수 서포트 센터	미나미스나 2-3-5-102	3640-9851	미나미스나 1, 2
신스나 장수 서포트 센터	신스나 3-3-37	5653-1735	히가시스나 8, 미나미스나 3, 6, 7, 신스나, 신키바, 유메노시마, 와카스

※전화를 거실 때는 모두 지역번호 '03'을 붙여서 전화해 주십시오.

개호보험에 관한 상담 창구

구청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증 및 보험료에 관한 문의	자격보험료계 03 (3647) 9493
개호 필요 인정에 관한 문의	인정계 03 (3647) 9496
방문 조사에 관한 문의	조사계 03 (3647) 9497
보험 급부에 관한 문의	급부계 03 (3647) 9498
고령자 재택 서비스에 관한 문의	재택 지원계 03 (3647) 4319
개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담	개호 서비스 이용 상담 03 (3647) 9099

장수 서포트 센터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발행 2024 년 4 월
우 135-8383 고토구 도요 4-11-28
고토구 복지부 개호보험과
Tel 03-3647-9111(대표)